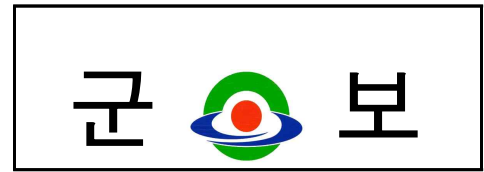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63호 2023. 7. 27.(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하천점용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05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불복청구 등 대응을 위한 권한 위탁 약정사항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06호)

공 고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029호)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034호)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04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예 천 군 수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용두천(지방하천)
점 용 자	효자면장
주 소	경북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1481
위 치	경북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605번지
점용면적 (허가량)	990㎡ (990㎡)
점용목적	토석의 채취
사업개요	호우 피해 응급복구
점용기간	2023년 07월 27일 ~ 2023년 08월 31일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불복청구 등 대응을 위한 권한 위탁 약정사항 고시

「165개 자치단체가 15개 업체에 수시부과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대응 등 권한 위탁 약정」이 체결되어 「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예 천 군 수

1. 위탁자 : 예천군수 등 165개 지방자치단체장
2. 수탁자 : 울산광역시
3. 위탁업무 : 담배소비세 관련 불복청구 등에 대한 대응 등 권한
4. 위탁기간 : 2023. 4. 28. ~ 지방세 불복청구 등(소송비용 부담분 정산 포함)의 절차가 종결된 시점

5. 위탁 내용 : 165개 자치단체가 부과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대응

6.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054-650-68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장례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 지원 대상 : 관내 무연고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

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물품, 장례식장 사용료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음
-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 장례수행자는 장례 후 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장례지원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장례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라. 장례지원 점검 및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신청인, 장례수행자가 지급 받은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하고,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점검
- 장례수행자 및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주민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ejdrjf1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행복과

3) 팩스 : 054-650-63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행복과(전화 : 054-650-61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설치 조례안

2. 제정이유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안 제4조)

나.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안 제5조)

다. 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등(안 제7조)

라. 청소년문화의 집 정기휴관(안 제12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주민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chanss15@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행복과장

3) 팩스 : 054-650-85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행복과(전화 : 054-650-85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8호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6.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라 한다)이라 한다.

- ② 청소년문화의 집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0-40)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개발 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4. 청소년 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
5.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예천군 직영으로 관리·운영한다. 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시설의 개방 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예천군 관내 거주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문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⑤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장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시설 사용의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8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청소년단체 등이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전액 면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전액 면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 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
2.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정기휴관) ①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법정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2. 매주 월요일
3. 시설물의 안전 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②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2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장비 사용료(제7조 관련)

1. 일반 사용료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원)		비 고	
				청소년	일 반		
2층	쿠킹룸	1회 4시간		무료	20,000		
	강의실	1회 2시간		무료	10,000		
	아트룸	1회 2시간		무료	20,000		
3층	댄스실	1회 2시간		무료	20,000		
	동아리실	1회 2시간		무료	10,000		
	체력단련실	1일(인당)		무료	3,000	*월 사용료 50,000원 *13세 미만 사용불가	
4층	음악실	1회 2시간		무료	20,000		
	실내체육관	1회 2시간(인당)		무료	2,000		
	다목적강당	구분	시간	무 료	평 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1일	09:00~20:00		140,000	180,000	
		오 전	09:00~12:00		45,000	60,000	
		오 후	13:00~17:00		60,000	75,000	
		야간	18:00~20:00		70,000	90,000	

※ 비고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목적강당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일반인은 15시이전만 이용 가능하다**
-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경우 구성원의 50%이상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요금을, 50%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요금을 적용한다.
-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이용 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초과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전용 사용료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체육 행사	체육 외 행사
실내체육관	1일	30,000원	50,000원
※ 비고 1.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시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행사”란 운동 경기만을 말하며, 무대사용, 공연 등 부대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육 외 행사로 본다.			

3. 부대시설 사용료

품명	구분	단위수량	사용료
냉·난방기	1회	-	20,000원
무대조명	1회	1조	20,000원
음향	1회	1조	20,000원
빔 프로젝터	1회	1대	15,000원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제7조 관련)

신청인	주 소		생년월일 (법인번호)	
	성 명 (단체명)		연락처	
신청내용	사용일시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사용목적	행사명, 주최, 주관, 행사내용 등 기재		
	사용인원			
	사용시설			
	부대시설	☐ 빔프로젝터 ☐ 냉·난방기 ☐ 무대조명 ☐ 음향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제7조 관련)

사 용 자	주 소			
	성 명 (단체명)		전화번호	
행 사 명				
허가일시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허가시설 (변경내용)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 용 료	금 액			
	산출내역			
허가조건	1.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규정을 준수한다. 2. 현수막, 안내문 등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3.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4.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5.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6.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7.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소통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규정(안 제4조)
- 나.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안 제6조)
- 다. 시설의 사용 신청(안 제8조)
- 라. 사용료 징수 및 감면(안 제12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주민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tkrhk8965@korea.kr
-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행복과장
- 3) 팩스 : 054-650-85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행복과(전화 : 054-650-85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센터 등을 한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입주시설”이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운영되는 개별 시설을 말한다.
3. “입주시설 관리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운영되는 개별 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합커뮤니티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040에 둔다.

제4조(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호명면 행정복지센터출장소
3. 가족센터
4. 건강증진센터
5. 청소년문화의 집
6. 지역아동센터
7. 다함께돌봄센터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 카페
10.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며,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적정하게 확보·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허가하거나 위탁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시설별 별도 운영하며, 군수는 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주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신청인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시설 관리자는 허가 시에 시설물의 관리와 설비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사용 신청 및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신청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신청일과 시설 사용예정일이 동일한 날인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예천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청인이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신청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입주시설별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별표 1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1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입주시설에서 정한 별도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대시설 사용료 등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냉·난방 사용료	1회	20,000원	
무대조명	1회	20,000원	
음향시설	1회	20,000원	
빔 프로젝터	1회	10000원	

【별표 2】

사용료 감면(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공연 등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면제	
· 만65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4에 따른 등록 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정 및 경상북도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50%	

[별지 제1호서식]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성명 (단체명및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용부대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사용인원명
변경신청 사항	구분	당초	변경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성명 (단체명및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용부대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사 용 료			
변경사항			
허가조건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